
◆ 政府 施策 ◆

電氣 품질고급화 중장기 대책 확정 — 送變電설비 개선 · 配電선로 보강 등역점 —

정부가 오는 2001년까지 전기품질 향상에 총 25조 3천1백80억원을 투자, 전기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함에 따라 이 계획이 완료되는 2001년에는 우리나라로 정전이 거의 없고 전압과 주파수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상생활 및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최근 전기품질을 美國 · 日本 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오는 2001년까지 7년간 당초계획인 16조70억원보다 9조2천8백10억원이 늘어난 25조3천1백8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전기품질 고급화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2000년대에는 발전소 건설을 위한 투자보다 전기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에 더 많은 자금이 할당될 전망이다.

그동안 발전소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그 다음으로 전기품질 고급화를 추진해온 정부정책이 전기품질을 우선하고 다음으로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쪽으로 일대 전환한 것이다.

정부의 전기품질 고급화 계획이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는 2001년에가서 호당 정전시간 14분, 전압유지율 99.9%, 주파수유지율 99.9%수준의 고급전기품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전기품질이 세계에서 가장 양호하다는 日本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수준이다. 日本은 지난 93년 호당정전시간 39분, 전압유지율 99.9%, 주파수유지율 99.8%를 기록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 는 93년 호당정전시간 1백72분, 전압유지율 99.0%, 주파수유지율 98.1%로 나타나 일본에 비해 품질이 낮았다.

70년대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전기가 들어가게 된 이제는 우수한 품질의 전기를 보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전기품질은 생활 및 생산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전기품질이 불량할 경우 정밀도가 높은 전기전자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전압이 낮아지면 컴퓨터나 방송 기기를 사용하다가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파수가 낮아지면 생산제품의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또 갑작스런 정전으로 인해 생활과 생산활동이 중단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전기관계자들은 전기품질이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전기품질 향상을 위해 95년 1조 2천60억원, 96년 1조4천8백70억원, 97년 2조2백80억원,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11조3천1백60억원 등 7년간 총 16조3백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투자계획을 확대수정하면서 95년 2조2천50억원, 96년 3조1백40억원, 97년3조6천4백90억원,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16조4천5백억원등 총 25조3천1백8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간 전기품질 향상에 투자되는 금액이 이 기간중 발전소건설에 투자되는 23조 8천8백40억원보다 1조4천3백40억원이나 많게 됐다.

그동안 전기품질 상상을 위해 투자되는 금액이 발전소 건설에 투자되는 금액의 절반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변화라 볼 수 있다.

전기품질 고급화에 투자되는 총 25조3천1백80억원의 재원은 한국전력이 전기를 판매한 수익금에서 조달된다. 따라서 한국전력이 주체가 되어 향후 7년간 단계적으로 전기품질 고급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전기품질 고급화 추진기간중에 노후설비를 새로운 설비로 교체하는데 가장 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노후설비의 교체는 오래된 제품을 단순히 새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기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대체해 나가는 것이다. 이에따라 가설된지 15년이상 된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가로 투자되는 9조2천8백10억원중 가장 많이 투자되는 부문은 송변전설비 개선으로 추가투자액의 71.4%에 달하는 6조6천2백98억원이 이 부문에 집중된다. 이는 전기를 발전소에서 산업시설이나 가정에 보내는 과정에서 전기의 품질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배전선로 보강에 추가투자액의 26.0%인 2조4천1백66억원이 투자된다.

반면에 각종 전기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에 전체 투자금액의 1.3%인 1천2백28억원, 발전설비 개선에 전체 투자금액의 1.2%인 1천1백17억원이 각각 투자된다.

추가투자액의 97.4%가 송변전설비 개선과 배전선로 보강에 투자되는 것이다.

정부가 발전소 건설부문에 대한 투자보다 전기품질 부문에 많은 투자를 하기로 함에 따라 전선·송변전·수배전반 등 전기품질 관련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업체들은 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기품질 관련 분야를 공략하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또 이와 관련해 전력제어기술과 전력기기 통합제어장치, 중전기기 유지보수시스템 등이 유망사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太陽光 發電등 중점과제 선정 — 通產部, 代替에너지 기술개발계획 확정 —

정부는 내년도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목표를 실용화 기반구축으로 설정하고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중형풍력발전 시스템의 개발 등을 중점 연구개발 분야로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정부, 학계, 연구소, 산업계 인사로 구성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전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내년도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은 8월말까지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센터에서 실행계획에 따른 과제를 공모·접수해 서면평가 및 공개평가를 한 후 통상산업부의 대체에너지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은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공급 취약성을 극복하고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꾸하는 한편 GR등 세계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한 미래에너지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8년부터 2001년까지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에는 우리나라 총에너지 수요의 3%를 대체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기본계획 아래 매년 기술개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아래 매년 기술개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대체에너지 개발에 정부에서 92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96년도 분야별 중점 연구 개발기술

분야	중점 연구 개발 기술
태양열 에너지	태양열 이용 냉·난방 시스템 개발
바이오 에너지	목질계 연료용 알콜 생산 기술개발
폐기물 에너지	폐기물 열분해 이용기술 실용화 개발
풍력 발전	중형 풍력발전 시스템 개발 및 운전기술
수소 에너지	연료용 수소제조 기술
태양광 발전	저가 고효율 실리콘 태양전기 제조기술 개발 고효율 박막 태양전지(비정질 실리콘, 화합물계)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실증운전 및 결과 분석
연료전지	인산형 연료전지발전 시스템의 실용화 연구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발전 시스템 및 주변장치 개발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석탄가스화기의 연속 운전 기술, 고온가스 정체장치 개발(탈황, 집진 기술)

清淨生産기술개발등 집중 지원

— 通産部, 환경친화적산업구조전환촉진법(案) 입법예고 —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공정개선, 청정생산 기술개발, 에너지 및 자원절약, 환경경영인증 실시, 환경설비 산업 육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5년 단위의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구조전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환경친화적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업종별·품목별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원료조달·생산·유통·소비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실천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기기로 했다.

입법예고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시책과 실천과제 추진을 위해 사업자가 실시하는 생산공정개선, 설비개체 및 신·증설투자에 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등의 자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또 생산공정에서의 기술혁신을 주내용으로 하는 청정생산기술의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협동연구체제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중 일부를 정부가 출연하며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를 지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21세기 성장유망산업인 환경설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품질인증, 공제사업, 국제 협력사업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ISO 14000 제정실시로 대비하고 기업의 환경영영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영영규격 제정,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 등 환경영영인증제도 실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통상산업부장관이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에너지 사용계획을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 온실가스배출 저감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다.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촉진법(안)주요내용

가. 산업구조 전환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

- 통상산업부장관은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5년단위의 종합시책을 수립, 추진
 - 산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 산업구조전환 촉진을 위한 목표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 공정개선, 청정생산기술개발, 에너지소비절약 방안
 - 환경설비산업의 육성방안
 - 환경영영인증제도 실시방안
- 종합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산업환경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구조전환 촉진을 위한 산업환경실천과제 수행

- 업종별, 품목별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구조전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산업환경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추진.
 - 원료조달단계에서의 환경부하감소 및 재생자원 활용제고 방안
 - 생산공정에서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저감, 환경오염제고·감축, 부산물의 효율적 이용, 용수의 재이용확대 등 생산공정개선방안
 - 유통단계에서의 포장 및 물류합리화 방안
 - 소비단계에서의 폐기물의 감량화·재활용 확대방안
- 업종별 산업환경실천과제에 따라 업계는 자체적으로 실천가능한 과제는 스스로 추진하고 지원이 필요한 과제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지원요청

다. 구조전환 촉진을 위한 자금 및 세제지원

◦ 자금지원(융자)

– 공정개선 및 개체, 신·증설투자에 대한 자금지원

- 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에너지 및 자원특별회계의 자금,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 산업은행 설비투자자금 등의 지원시 산업구조개편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우선지원 강화

◦ 기술개발자금지원(출연)

– 산업구조전환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과 산업환경실천과제에 의거 선정된 기술개발 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사업을 추진

- 생산공정개선을 위한 청정생산기술개발에 중점 지원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산·학·연 협동 또는 개별 연구소, 기업별로 추진

– 통상산업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 출연

◦ 세제지원

–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업대상 범위 확대

- (현행) 공해방지시설→(개선) 공정개선 및 개체, 청정생산시설 등

– 관세감면 대상 확대

- (현행) 공해방지시설(완제품위주)→(개선) 부품 및 기자재까지 확대

※ 법안에는 지원근거만 규정하고 구체적 내용은 “조세감면규제법”등에 규정

라. 청정생산기술 기반조성

◦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 지정·운영

– 산·학·연 협동개발 활성화,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지원

– 외국 관련기관과의 청정기술교류 및 협력

– 청정생산기술과 관련한 교육홍보

◦ 청정생산기술 정보유통 촉진

– 청정생산기술정보의 수립·처리·관리·보급 및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 산업기술정보원의 기능을 강화하여 추진

마. 환경설비산업의 육성

- 환경설비에 대한 국내기반 구축

 - 환경설비기술개발, 핵심기자재 국산화, 품질인증제 실시, 전시회·세미나등 개최

- 공제사업실시

 - 개발된 환경설비기술의 실용화에 따른 기업의 초기위험부담을 줄이고 품질 및 하자보증

바. 환경영영인증제도 도입

- 환경영영에 관한 표준(한국환경경영규격)을 제정

 - 환경영영을 위한 인증기관지정, 심사원 양성을 위한 연수기관설치, 인증업무 처리에 관한 절차

 - 규정등 국내기반 구축

사. 산업환경정책심의회 설치운영

- 구조전환촉진 시책을 효율적으로 촉진키 위해 산업환경정책심의회를 설치운영

〈기능〉

 - 종합시책 심의

 - 산업환경 실천계획의 지원과제 심의

 - 환경설비산업, 청정생산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사업 심의

 - 국제환경규제 움직임에 대한 산업계대책 심의

 -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의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심의회에 환경영영규격의 제정, 환경영영체제인증등 환경영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환경영영표준회의를 둠

아. 온실가스배출저감 조치

- 통상산업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기후변화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온실가스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권고할 수 있음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 제출대상사업에 국한

CALS 體系도입 적극 추진 – 通產部, 민간주도 研究組合설립계획 –

산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판매·유지보수에 이르는 전과정이 통합된 정보시스템에 의해 동시적으로 유통·순환되는 CALS(Continous Acquisition and Life-cycle Support 또는 Commerce At the Light Speed)체계 도입이 적극 추진된다.

통상산업부는 CALS체계를 적극 도입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공업기반기술개발 사업의 연구기획사업에 반영하는 한편 KAIST, 국방대학원등 관련전문기관과 연구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와 국제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업계, 연구기관, 단체 등을 중심으로 관련단체의 설립을 추진하고 관련기술의 공동개발과 기술정보교류를 위해 민간 주도의 연구 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CALS체계를 전산업적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CALS 국제회의 및 전시회인 'CALS KOREA 95'를 개최키로 했다.

CALS란 산업계의 제조·연구개발·설계·시장관리·구매·재고·판매 등의 제반정보를 통합된 정보시스템에 의해 동시적으로 유통·순환시킴으로써 업무의 과학적·효율적 수행은 물론 정보 공유와 비용절감이 가능해 산업경쟁력을 크게 제고시키는 한편 첨단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산업정보화시스템이다.

이미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은 정부관련 조직을 구성해 정책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조업 중심의 민간단체를 통해 진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의 CALS 도입회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CALS 도입으로 제품설계 공정에서 개발기간을 82% 단축하고 설계도면수를 98% 절감함은 물론 생산공정에서 조립공정이 6주에서 2시간으로 단축되고 불량률제거율이 6배에 달하는 등 놀라운 기대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 CALS 도입에 따른 효과

관 련 공 정		효 과
설 계 공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기간 단축 - 설계도면수 절감 - 설계변경횟수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82% 평균 240개→3개 80%
생 산 공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립공정 - 공정축소 - 불량률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주→2시간 7개→1개 6배
생 산 정 보 관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관리, 인쇄비 - 자료의 착오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 절약 98%

100PPM 品質認證制 시행

– 인증업체 資金 · 稅制 · 人力등 지원 –

공업진흥청은 품질혁신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불량율 100PPM을 달성한 업체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100PPM 품질인증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간다.

100PPM 품질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자금, 세제, 인력확보, 판로 또는 각종 행정지원 등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100PPM 품질혁신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품질혁신본부에서 현지심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ISO 9001 또는 ISO 9002에 준한 규격의 품질시스템 인증을 받은 공장이나 100PPM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가 품목을 추가할 경우에는 현지심사가 면제된다.

100PPM 품질인증 판정기준은 모기업에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 인증신청 당시의 전월을 기준으로 6개월간의 평균 납품불량률과 자체 완성품검사 평균 불량률이 100PPM 이하여야 하고 공장심사기준 각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점수합계가 70점이상일 경우에 인증한다.

모기업에 납품하지 않는 기업은 인증신청 당시의 전월을 기준으로 6개월간의 자체 완성품 검사 평균불량률이 100PPM 이하여야 하고 공장심사 기준 각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점수합계가 70점 이상일 때 인증을 부여한다.

주요 심가시준을 살펴보면 100PPM 품질혁신에 대한 경영책임, 품질시스템, 계약심사, 설계관리, 문서 및 데이터관리, 구매관리, 제품식별 및 추적성, 공정관리, 검사 및 시험, 검사 및 시험설비 관리 등 품질혁신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이 망라돼 있다.

先導技術개발 신규 課題 선정 – 고속전철 기술개발 등 10개 선정 –

과학기술처는 최근 선도기술개발사업협의회를 개최해 주문형반도체(ASIC) 등 4개 제품기술개발사업과 우리말 컴퓨터 등 6개 기반 기술개발사업 등 10개의 선도기술개발사업 신규후보과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선도기술개발사업은 2천년대 세계 7대 과학기술 선진권 진입을 목표로 특정제품 또는 기술에서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요소기술을 선정, 產·學·研 및 관계부처, 정부 투자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개발하는 국가주도의 대형연구개발사업이다.

과기처는 신규후보과제를 결정하는데 있어 지난 92년 선도기술개발사업 착수당시의 사업유형별 선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제품기술개발과제의 경우 2001년까지 세계 또는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제품관련 기술개발과제로 개발기간중 자원동원이 가능한 기술 분야 △기반기술개발과제의 경우 과학기술선진국 진입을 위한 전략거점 기술로서 자력확보가 불가피한 분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내의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기술분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규후보과제와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제품기술개발

- ▲ 주문형반도체(ASIC)개발(95~98)=HDTV용 ASIC 설계, ASIC 설계기술 기반구축
- ▲ 차세대 평판표시장치 개발(95~2001)=차세대 정보통신 단말기용 천연색 평판소자 생산기술 확보
- ▲ 고속전철 기술개발(95~2001)=300km/H급 이상의 한국형 고속전철 기술개발 및 관련부품 기술개발
- ▲ 해양공간이용 대형복합플랜트 개발(95~2000)=98년까지 해상폐기물처리 플랜트 개발

◆ 기반기술개발

- ▲ 차세대 교통관제시스템 개발(95~2001)=도로교통 종합제어시스템 개발

▲ 의료공학 기술개발(95~2001)=수요가 큰 의료용 재료 및 의료기기 기술개발, 의료영상 기반기술 확립

▲ 우리말 컴퓨터 개발(95~2001)=한국어 문자·음성 인식 및 조작 입출력 기술개발, 대용량 입출력 병렬처리기술개발

▲ 초소형 정밀기계(마이크로 메카트로닉스) 기술개발(95~2001)=나노 수준의 초정밀가공기 기술개발, 미세가공기술 개발 및 소형정밀 핵심 기계부품 개발, 나노과학기술 기반연구

▲ 감성공학 기반기술개발(95~2001)=인간감성의 측정및 평가기술 연구

▲ 民·軍 겸용기술중 1개과제=과기처·국방부가 협의해 추후 결정(예;초고주파 응용기술개발)

❖ 工業배치및 工場設立에 관한 法律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 ❖

통상산업부는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법령안입법예고에관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통상산업부 공고 제1995-100호, '95. 7. 24) 했다.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공장입지에 관한 애로해소와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대비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중소기업 공장입지 애로해소 종합대책』과 『산업용지 공급원활화 방안』의 주요내용을 법제화하고 그 동안 기업에서 제기된 수도권안에서의 공장설립 제한내용을 일부 완화하여 기업의 경쟁력 확보 노력을 지원하고자함.

2. 주요골자

가. 성장관리지역에 소재한 공업지역내에서 중소기업공장의 경우 신·증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건축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등 성장관리지역에서의 입지규제를 완화함.

나. 중소기업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종래에는 기존공장건축면적 범위이내에서만 이전을 허용하였으나 기존면적과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이내에서 이전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이 과밀억제지역과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함.

- 다. 자연보전지역에 소재한 공업지역내에서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종래 231개에서 도시형업종의 확대에 맞추어 337개로 조정하는 등 자연보전 지역에서의 입지규제를 완화함.
- 라. 자원재활용 관련 공장중 폐자원을 가공처리하는 공장에 대해서만 수도권안에서 공장설립을 허용하던 것을 폐자원을 이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공장까지 설립이 가능하도록 함.
- 마. 수도권외지역에 소재한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지인 경우에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의 20%이내까지는 이를 공장증설용 부지로 인정,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도록 하여 기업이 장래 증설을 위한 공장부지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바. 과밀억제지역에 소재한 공업단지중 공장의 이전·폐쇄 및 주변지경의 개발등으로 공단으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공업단지를 첨단산업화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신·증설을 허용함.
- 사. 성장관리지역에 소재한 대기업공장중 국제경쟁력의 확보를 위하여 증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종래 7개에서 10개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199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산산업부장관(문의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산업배치과 503-9494)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